
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(1)] <개정 2022. 3. 18.>

#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

(앞쪽)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			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				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 )					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				
③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						
구 분 계정 과목	자체 연구개발비					
	인건비		재료비 등		기타	
인원	⑥ 금액	건수	⑦ 금액	건수		
합 계						
구 분 계정 과목	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		인력개발비		(11) 총 계 (⑥+⑦+⑧+⑨+⑩)	
	건수	⑨ 금액	건수	⑩ 금액		
합 계						
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						
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 (=11)	⑬ 직전 4년 발생액 계 (⑭+⑮+⑯+⑰)	⑭ (직전 1년)	⑮ (직전 2년)	⑯ (직전 3년)	⑰ (직전 4년)	
⑯ 직전 4년간 연 평균발생액 (⑬/4)		⑯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(⑭+⑮+⑯)/3]		⑯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(⑭+⑮)/2]		
	⑯ 증가발생액 (⑫-⑬)					
④ 공제세액						
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	중소기업	⑯ 대상금액 (=11)	⑯ 공제율		⑯ 공제세액 (⑯×⑯)	
			25%			
	중소기업 유예 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	⑯ 대상금액 (=11)	⑯ 유예기간 종료연도	⑯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	⑯ 공제율	⑯ 공제세액 (⑯×⑯)
					종료 이후 1~3년차 15% 종료 이후 4~5년차 10%	
증가발생금액 공제 (직전 4년간 연구·인력개발비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⑭<⑯ 경우 공제 제외)	중견기업	⑯ 대상금액 (=11)	⑯ 공제율		⑯ 공제세액 (⑯×⑯)	
			8%			
	일반기업	⑯ 대상금액 (=11)	공제율		⑯ 공제세액 (⑯×⑯)	
		⑯ 기본율	⑯ 추가	⑯ 계 (⑯+⑯)		
⑪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	증소기업 (⑯와 ⑯ 중 선택)	⑯ 대상금액 (=11)	⑯ 공제율	⑯ 공제세액 (⑯×⑯)	*공제율 -증소기업: 50% -증견기업: 40% -대기업: 25%	
			%			
	증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(⑯와 ⑯ 중 선택)	증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(⑯와 ⑯ 중 선택)				
		증견기업(⑯와 ⑯ 중 선택)				
		일반기업(⑯과 ⑯ 중 선택)				

210mm × 297mm [백상지 80g/m<sup>2</sup> 또는 중질지 80g/m<sup>2</sup>]

⑤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단서 관련)  
= 연구·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

구분	정부출연금 교부처	관련 법령	수령일	수령금액	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

## ⑥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二〇一九

## 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「일반연구·인력개발비」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1. "중소기업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  2. 재료비 등의 "(7) 금액"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·부품·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(문화상품제작에 함함)·서체·음원·이미지의 대여·구입비를 적습니다.[별표6 제1호가목2) 항목]
  3. 기타의 "(8) 금액"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·시험용 시설 임차(이용)비용을 적습니다.[별표6 제1호가목3) 항목]
  4. 인력개발비의 "(10) 금액"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2호에 따른 위탁훈련비,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을 적습니다.
  5. 공제율의 "(35) 추가"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·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.
  6. ⑤, ⑥의 "구분"란은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.(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)
  7. "(5)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"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  8. "(6)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"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(2)] <개정 2022. 3. 18.>

##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③ 대표자 성명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	② 사업자등록번호 ④ 생년월일		
	(전화번호: )			
	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
③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				
구 분 기술명	계정과목	자체 연구개발비		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(⑥+⑦+⑧)
		⑥ 인건비	⑦ 재료비 등	
	합 계			
④ 공제세액				
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	중소기업	⑩ 대상금액 (=⑨) 30%	공 제 율	⑯ 공제세액 (⑩×⑬)
			⑪ 기본율 ⑫ 추가 ⑬ 계(⑪+⑫)	
		중소기업 외의 기업	⑮ 대상금액 (=⑨) 20% 또는 25%	
	⑯ 기본율 ⑰ 추가 ⑱ 계(⑯+⑰)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</li><li>전담부서의 조직·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</li><li>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(일반 연구개발업무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)</li><li>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</li><li>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건본품·부품·원재료·시약류 구입 명세서, 소프트웨어·서체·음원·이미지의 대여·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</li><li>일반연구·인력개발비와 신성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</li><li>그 밖에 신성장·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</li></ul>	수수료 없음

### 작성방법

\*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「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」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- "중소기업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- "⑥ 인건비"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 1.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'신성장·원천기술 코드(01)'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"⑦ 재료비 등"란은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본품·부품·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·서체·음원·이미지의 대여·구입 명세서를 적습니다.
- "⑧ 재료비 등"란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 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'⑦신성장·원천기술 재료비'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"⑨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"란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 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⑪기술구분코드가 '신성장·원천기술 코드(01)'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"⑩, ⑪ 추가"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(코스닥 상장 종전기업의 경우 100분의 15)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.
- "⑫ 기본율"란은 20%(코스닥 상장 종전기업의 경우 25%)를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 또는 중질지 80g/m<sup>2</sup>]
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(3)] <개정 2022. 3. 18.>

##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		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			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	(전화번호: )			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			
③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					
구 분 기술명	계정과목	자체 연구개발비		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(⑥+⑦+⑧)	⑨ 합계 (⑥+⑦+⑧)
		⑥ 인건비	⑦ 재료비 등		
	합 계				
④ 공제세액					
해당 연도에 공제 받을 세액	중소기업	⑩ 대상금액 (=⑨)	공 제 을		⑭ 공제세액 (⑩×⑬)
			⑪ 기본율	⑫ 추가	
		40%			
	중소기업 외의 기업	⑯ 대상금액 (=⑨)	공 제 을		⑯ 공제세액 (⑯×⑰)
			⑯ 기본율	⑰ 추가	
		30%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▪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▪ 전담부서의 조직·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▪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일반 연구개발업무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 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) ▪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▪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·부품·원재료·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▪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, 신성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▪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
### 작성방법

\*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'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'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- "중소기업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- "⑥ 인건비"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 1.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'국가전략기술 코드(02)'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"⑦ 재료비 등"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·부품·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합계를 적습니다.
- "⑦ 재료비 등"란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 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'⑧국가전략기술 재료비'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"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"란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 부표(2)] 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⑩기술구분코드가 '국가전략기술 코드(02)'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"⑫, ⑯ 추가"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.

(앞쪽)

과 세 연 도	~	<b>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발생 명세</b>	법 인 명	
			사업자 등록번호	

**1. 인건비 발생 명세**

(단위: 원)

① 연구과제명	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			
	성명	생년월일	인건비지급액	연구전담 등 구분
합 계				[ ]전담, [ ]보조, [ ]기타
				[ ]전담, [ ]보조, [ ]기타
				[ ]전담, [ ]보조, [ ]기타
				[ ]전담, [ ]보조, [ ]기타
				[ ]전담, [ ]보조, [ ]기타

**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**

(단위: 원)

③ 연구 과제명	④ 재료비 등				
	계	견본품 등 (별표 6 1.가.2))	임차료 등 (별표 6 1.가.3))	위탁·공동연구비 (별표 6 1.나))	기타 (별표 6 1.다~사))
합 계					

**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**

(단위: 원)

⑤ 연구 과제명	⑥ 연구개발비				⑦ 금액	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
	상호 또는 성명	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	연구착수일	연구종료일		
합 계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 또는 중질지 80g/m<sup>2</sup>]

## 작성방법

\* 각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(1)]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### 1. 인건비 발생 명세

- 가. "(① 연구과제명"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- 나. 1명의 연구원이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다. "(② 연구개발 인력 개발비"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(1)] 자체 연구개발비의 인건비의 '(⑥금액'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라.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「조세특례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(다만,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, 퇴직급여총당금,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).
- 마. "연구전담 등 구분"란은 [ ]에 '연구전담요원', '연구보조원', '기타' 중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.
- \* "연구전담요원"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\* "연구보조원"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\* "기타"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.

### 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

- 가. "(③ 연구과제명"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- 나.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「조세특례한법 시행령」 별표 6(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)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.
- 다. "(④ 재료비 등" 란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(1)] 자체 연구개발비의 재료비 등의 '(⑦금액'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
### 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- 가.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한법 시행령」 별표 6(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) 제1호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
- 나. "(⑤ 연구과제명"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- 다. "(⑥ 연구개발비"란은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(재위탁 포함)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(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)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.
- 라. "(⑦ 금액"의 합계는 [별지 제3호서식(1)]의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의 '(⑨금액'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.
- 마. "(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"란은 위탁·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.

(앞쪽)

과 세 연 도	~	<b>해당 연도의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</b>	법 인 명 (상 호)
			사업자등록번호

### 1. 인건비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① 연구 과제명	② 기술 구분 코드	③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			
		성명	생년월일	인건비지급액	연구전담 등 구분
합 계					[ ]전담, [ ]보조, [ ]기타
					[ ]전담, [ ]보조, [ ]기타
					[ ]전담, [ ]보조, [ ]기타
					[ ]전담, [ ]보조, [ ]기타
					[ ]전담, [ ]보조, [ ]기타

### 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④ 연구 과제명	⑤ 기술 구분 코드	재료비 등		
		⑥ 총계(=⑦+⑧)	⑦ 신성장·원천기술 재료비	⑧ 국가전략기술 재료비
합 계				

### 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(단위: 원)

⑨ 연구 과제명	⑩ 기술 구분 코드	⑪ 연구개발비				⑫ 금액	⑬ 수탁기업 전담부서 등 수행 여부
		상호 또는 성명	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	연구 착수일	연구 종료일		
합 계	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 또는 중질지 80g/m<sup>2</sup>]

## 작 성 방 법

※ 각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(2)]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(3)]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또한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·인력개발비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 연구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.

### ※ 공통 사항

- 가. “①, ④, ⑨ 연구과제명”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- 나. “②, ⑤, ⑩ 기술구분 코드”란은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“01”,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“02”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### 1. 인건비 발생 명세

- 가.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(다만,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, 퇴직급여충당금,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).
- 나. “연구전담 등 구분”란은 [ ]에 ‘연구전담요원’, ‘연구보조원’, ‘기타’ 중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.
  - \* “연구전담요원”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  - \* “연구보조원”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  - \* “기타”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.

### 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

- 가. “⑦ 신성장·원천기술 재료비”란은 해당 과세연도에 신성장·원천기술 개발업무를 위해 사용된 재료비를 적으며, “⑧ 국가전략기술 재료비”란은 해당 과세연도에 국가전략기술 개발업무를 위해 사용된 재료비를 적습니다.

### 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- 가.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 비용을 적습니다.
- 나. “⑪ 연구개발비”란은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위탁(재위탁 포함) 및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의 현황 등을 적습니다.
- 다. “⑬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”란은 위탁·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.
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 부표(3)] <개정 2022. 3. 18.>

과 세 연 도	~	<b>연구과제 총괄표</b>	법 인 명
			사업자 등록번호

작성방법

- \* 각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(1)]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(2)],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[별지 제3호서식(3)]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※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 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,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.

※ 신설장·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.

※ 작성한 연구과제는 ①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또는 ②새로운 서비스, 서비스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
- ① 연번 "란에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.
  - ② 기술구분 코드 "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.

연구개발세액공제 종류	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	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	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
코드번호	01	02	03

3. “③ 연구과제명”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.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,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, 연구개발보고서, 연구노트(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,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만 해당), 투입 인력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.
  4. “④ 기술명”란은 신성장·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명을 적습니다.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둘 란을 빙카으로 남겨둡니다.